

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6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3. 5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사무관리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」 제2조제2항의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,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」 제4조제2항의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는 규정과 볼일치하여 삭제
- 나. 「사무관리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공인조례 관련 규정인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 제59조(인영의 인쇄사용)이 삭제되었으므로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」 제2조제6항 삭제

3. 근거법규

- 가.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
- 나.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」 제4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다. 입법예고 사항 : 2012. 10. 29. ~ 11. 19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제155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,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,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⑥ 인영의 인쇄사용시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9조를 준용한다.</p>	<p>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6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3. 05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3. 05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3. 13(수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해권 행정지원국장)

「사무관리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」 제2조제2항의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,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」 제4조제2항의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는 규정과 불일치하여 삭제
- 나. 「사무관리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공인조례 관련 규정인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 제59조(인영의 인쇄사용)이 삭제되었으므로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」 제2조제6항 삭제

5. 관련법규

- 가.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
- 나.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」 제4조

6. 검토의견

-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인조례」 제2조2항과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」 제4조제2항의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